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대한 소유제한 규제 완화〉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632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상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0. 17.
3. 회 부 일 : 2025. 10.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기업집단의 소유구조가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경우로서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문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는 대규모 공장 설비투자과 장기적 자금 지원이 필수적인데 첨단전략산업기금이 공장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기업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경우 손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만 허용되므로 사실상 기금 투자를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됨. 이로 인해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손자회사의 SPC인 자회사에 대하여 첨단전략산업기금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공장설비투자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투자를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18조제4항제4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대하여 일반지주회사의 소유제한 금지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 ③ (생략)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신설)</u>	<u>4의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가 특수목적법인으로서 해당 법인 주식의 일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소유하는 경우</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목적으로 하면서¹⁾ 이를 위하여 지주회사 규제(제17조, 제18조),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제한(제19조, 제21조부터 제23조), 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제25조) 등의 소유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²⁾

□ 지주회사³⁾ 규제를 살펴보면, 법 제18조는 지주회사에 대한 최소부채비율규제(제2항제1호), 최소지분비율규제(제1항제2호), 비계열사지분보유 제한(제2항제3호, 제3항 및 제4항), 금산분리(제2항제4호 및 제5호, 제3항) 등을 둠.

- 이는 지주회사가 차입 등을 통해 과도한 수평·수직출자를 추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가공자본의 형성, 소유·지배의 괴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 나아가 제18조제4항에서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규제로서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벤처지주회사인 손자회사 제외)는 발행주식 전체(100%)를 소유하는 경우에만 증손회사를 보유할 수 있게 하는데, 이는 현행법이 원칙적으로 수직출자는 2단계(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까지만 허용하고 증손회사는 지분을 모두 보유하였을

1)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현행법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소유제한 외에도 채무보증제한과 같은 행위규제, 공시제도와 같은 시장감시제도도 둠.

3) 지주회사란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함(법 제2조제7호)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취지임.

□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예외적으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주식 일부를 소유한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을 추가하려는 것임.

- 즉, 원칙적으로 증손회사의 지분은 손자회사가 100% 보유하여야 하나, 개정안처럼 첨단전략산업기금도 특수목적법인인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보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대규모 자금(첨단전략산업기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대로 입법화할 경우 반도체·배터리·방위산업과 같은 대규모 공장 증설이 요구되는 분야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투입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확보가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음.

- 예를 들어, 현행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인 SK(주)의 경우 자회사인 SK스퀘어가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SK하이닉스가 대규모 반도체 제조공장(반도체 팹)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체자금으로 충당하여야 하나, 개정안대로 하면 SK하이닉스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합작회사의 형태로 반도체 제조공장 설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운영할 수 있게 됨.

□ 정부도 첨단전략·벤처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자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100%)을 완화하겠다는 방침⁴⁾임.

□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에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외 적용제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입장임.

특히, 의무지분율의 완화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에 해당하므로 개정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함.

- 다음으로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함) 개정을 통해 반도체 분야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 완화, 금산분리의 예외로서 금융리스업 허용 등을 추진하려는 계획이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승인을 거쳐 지방투자를 전제로 반도체 분야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금융리스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임.

- 또한, 첨단산업에 대한 다양한 자금조달의 방법이 있는데도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사항임.

예를 들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자금조달은 이익잉여금이나 외부

4) 2025년 대통령 업무보고(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차입 또는 유상증자⁵⁾를 통해서도 가능한데도, 이러한 기업의 노력이 선행되지 아니한 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결국 동일인(총수)의 지배력 회석을 감수하지 않기 위함이므로 부당하다는 의견이 경제개혁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음.

- 마지막으로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⁶⁾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운용 주체가 한국산업은행이라는 점⁷⁾을 고려하면 공정거래법상 소유규제의 완화 여부가 한국산업은행의 투자 결정에 종속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

문 의 처

02)6788-5109

5) 자금조달을 위하여 돈을 받고(有償),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增資) 것을 말함.

6) 제29조의7(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①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제29조의9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원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통하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둔다.

7) 제29조의9(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운용 및 회계 등)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관리·운용한다.